##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190 제출연월일 :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자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장부·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해당형벌에 처하도록 하며,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 제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6조제16호 중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를 "제280조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42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54호를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제44호 중 "제335조의7"을 "제335조의7, 제338조, 제356조"로, "위반하여"를 "위반하여 해당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때에는 제446조제16호 및 제5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46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삭 제	
3. ~ 15. (생 략)	3. ~ 15. (현행과 같음)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	16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제113조제1항 또는 <u>제280</u>	<u>제280</u>
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조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교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42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
	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u>아니한 자</u>
17. ~ 53의3. (생 략)	17. ~ 53의3. (현행과 같음)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	<u>&lt;삭 제&gt;</u>
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u>을 사용한 자</u>	
55. ~ 63. (생 략)	55. ~ 63.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49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삭 제
13. ~ 43. (생 략)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 49. (생 략) ② ~ ④ (생 략)

13. ~ 43. (현행과 같음)
44
제335조의7, 제
338조, 제356조
위반하여 해당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44의2. ~ 4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